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조 례 안 예 고



고 양 시 의 회

목 차

의안 번호	조 례 명	발의의원	페이지	비고
291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은정의원 왕성옥의원	3	
292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윤숙의원 강영모의원 김완규의원	14	
	이 하 빈 칸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1
----------	-----

제안연월일 : 2012년 6월 27일
제안의원 : 고은정, 왕성옥의원
찬성의원 : 장제환의원 등 14명

□ 제정이유

- 가. 6·25 전쟁 당시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의 조성 및 지원,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고양시가 평화와 인권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고양금정굴 사건” 등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희생된 이름 모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양극화와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6·25 전쟁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폐해에 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양시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고양시 역사평화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 함(안 제3조)
- 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온 고양금정굴 사건 희생자의 유해안치와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제반사업(안 제12조)
- 라. 6·25전쟁 중 희생된 모든 민간인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

☐ 예산수반사항 : 고양시역사평화공원위원회 회의수당

15명*80,000*5회=6,000,000원

☐ 기타사항 : 별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사항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중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고양금정굴 사건” 등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역사평화공원의 조성 및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가 평화와 인권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란 6·25 전쟁 중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국가권력 및 그에 준하는 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말한다.
2. “고양시역사평화공원”이란 전쟁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폐해 등에 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고양시역사평화공원위원회)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역사평화공원(이하“역사평화공원”이라 한다) 조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역사평화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역사평화공원 조성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역사평화공원 내에 설치할 시설의 종류, 기능,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역사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희생자 유해안치 등에 관한 사항
6. 역사평화공원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사항
7. 화해·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민간인 희생사건 및 화해 위령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원의 조성에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3. 희생자 유족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원 조성 관련부서 국장
5.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역사평화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 위령 및 화해사업, 교육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다른 위원회와의 협의절차) 위원회가 마련한 역사평화공원 조성계획 등을 고양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 등 행정절차상 필요한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면 해당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 된 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위원회 실시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책에 반영한다.

제12조(기타 사업)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화해위령 사업과 연관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1. 6·25 전쟁 중 고양지역에서 희생된 모든 민간인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2. 평화인권,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제반 교육사업
3.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공원의 관리·운영) 시장은 역사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역사평화공원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

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11.9>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3명(수사사무관 1명, 수사주사 2명)은 국가정보원,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총리실,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처,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은 기획재정부, 4명(교육행정사무관 1명, 교육행정주사 3명)은 교육과학기술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은 통일부, 1명(외무공무원 5등급 1명)은 외교통상부, 7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8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5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방부, 1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12명(경정 3명, 경감 또는 경위 9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별표] <개정 2008.2.2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총 계	150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 계	3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상당	1
6급상당	1
일반직 계	14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3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8
행정사무관·부감사관·토목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외무공	41
무원 5등급·경정 또는 5급상당 별정직	
행정주사·교육행정주사·검찰주사·수사주사·경위·경감 또는 6급상당 별정직	76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7급상당 별정직	15

[별지 서식]

(앞 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

사 진

(2.5cm×3cm)

소 속 : _____

직위/직급 : _____

성 명 : _____

기 간 : _____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0mm×90mm

□ 기타사항참고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사항]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사과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집단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명예회복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재발방지

정부는 비록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 내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라. 화해와 위령사업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고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를 영구 봉안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윤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
----------	-----

제안연월일 : 2012년 6월 27일
제 출 의 원 : 김윤숙, 강영모, 김완규의원
찬성의원 : 박윤희의원 등 6명

1. 제안이유

- 고양시 생태공원은 일반공원과 달리 생태를 주제로한 공원으로, 생태적 기능이 유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생태공원의 특성화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생태교육센터 운영, 타 생태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에 대한 고양시 환경생태 교육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고,
- 생태교육 및 시민들의 생태환경 복지에 기여하는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운영실태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 고양시 시민들의 환경생태복지 향상과 환경생태 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역 발굴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문기구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양시 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실태 확인 및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및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 가. 고양 생태학습공원 현황
- 나. 생태교육센터운영계획
- 다. 통합 및 연계가능한 생태프로그램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공원의 운영·유지관리, 생태공원의 특성화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생태교육센터 운영, 타 생태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환경생태 교육의 비전 제시와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운영실태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양시 자연생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2. 생태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연계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양시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확인 및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내 생태보전이 양호한 지역발굴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공원 및 생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생태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7.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자연생태 보전 및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공무원
3. 생태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고양시교육청 관련자
5.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단체의 경우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추천원의 재직기간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될 경우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활용 및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

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국·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시행일 : 2012.7.22] 제18조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고양 생태학습공원 현황

조성배경	- 고양시는 인구 96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태를 주제로한 생태공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심지내 나대지를 대상으로 생태복원 및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생태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 본 생태공원은 고양시의 유일한 생태를 주제로한 생태공원으로 고양시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활용 및 현재 부서별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연계화, 테마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 고양시 시민들의 생태교육의 기회지수 높이고 시민들에게 평등한 생태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한 생태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사업추진	2008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생태학습공원 조성사업 추진.
위치·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30번지(농수산물도매센터 인근) - 면적 : 28,435m²
생태교육센터 (Passive House)	- 다양한 생태교육을 위한 시청각실, 생태도서관, 전시실, 교육장을 갖춘 2층 규모(264m²)의 생태교육센터 건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90%이상의 Passive House(단열재,태양열,자연채광 등)로 건축하여 생태교육 및 환경교육을 병행할수 있도록 건축. - 건축연면적 264m², 2층 1 층 : 관리실,화장실,생태도서관,전시실 2 층 : 시청각실, 전시·교육장 - 옥상 1층옥상(옥상조경 및 야외교육장) 2층옥상(태양광시스템 15kw, 야외전망대)
생태 프로그램 통합계획	본 고양 생태학습공원을 거점으로 한 자연생태위원회 운영 및 생태 클러스터(Cluster)구축을 통한 타 생태프로그램 연계, 통합운영, 특화된 테마별 생태프로그램 운영.

운영방식	일반공원과 차별화된 생태공원의 특성상 생태보전을 위한 생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약제에 의한 제한적 개방형 운영.
------	---

비전	본 생태공원을 거점으로 고양시 생태교육 클러스터 구축하여 부서별 운영중인 타 생태교육의 통합 및 연계, 테마화, 활성화를 통하여 고양시 시민들에게 생태교육의 기회지수를 높이고 평등한 생태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생태복지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함.
----	--

고양 생태 학습공원내 세부시설...	생태연못	- 생태연못 : 1,207m² - 정화지 : 2,397m² - 계류 : 2,066m²(B= 10m, L= 263m) - 식물섬 : 159m²
	생태교육시설	- 생태학습장건축(연면적 264m², 2층, 옥상) 1층 : 관리실, 화장실, 생태도서관, 생태전시실 2층 : 시청각실, 전시·교육장, 전망시설 - 옥상 : 옥상조경, 전망시설, 태양광시설 - 야외교육장(파고라1식) : 40명교육
	생태관찰테마	- 수목테마 : 약용수목관찰원 등 19개 테마 3,259주 - 관목테마 : 수수꽃다리 26종 60,898주 - 야생화 : 구절초 102종 등 489,144주 - 암석원 : 1식
	탐방로 및 산책로	- 탐방로 : B=4m, L= 1,184 m - 목재데크 : B=2m, L= 338 m - 메타쉐콰이어 산책로 : B=1m, L= 348 m
	생태학습공원표지판	- 문주 : 1개소 - 시설안내판 : 4개소 - 방향안내판 : 4개소 - 종합안내판 : 1개소 - 생태해설판 : 5개소 - 수목명찰 : 300개소
	휴게시설 및 공간	- 잔디광장 : 1개소(1,858m²) - 정자 : 1개소(7m×7m×4.2m) - 원두막 : 3개소(4m×3m×2.8m) - 원목등의자 : 20개소(0.8m×1.8m)
	주차시설	총 37대 : 버스3대, 장애인2대, 일반32대
	기타시설	- 입구광장 : 1,723 m² - 외곽부 대나무울타리 : H=1.7m, L= 528 m - 자전거보관대 : 2개소

고양 생태교육 클러스터(cluster)센터 운영 계획

- 생태학습공원 중심으로 타 생태프로그램 연계 및 통합운영 -

1

추진배경

- 우리시 유일의 생태주체공원인 고양 생태학습공원을 거점으로한 현재 공원별 운영중인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 테마별 생태프로그램별 특성화를 통한 생태교육 체계화, 통합시스템구축,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시를 생태교육의 기회지수가 가장 높은 "테마가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20대 역점과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클러스터(cluster) : 유사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여 정보와 지식공유 및 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함.

2

생태 클러스터(Cluster) 구축 필요성

- 첫째.** 고양시 생태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기 운영중인 생태프로그램별 연계, 정비, 체계화, 통합운영시스템 필요.
- 둘째.** 인위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지양하고 관내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발굴을 통한 생태학습·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셋째.** 운영중인 생태프로그램별 정보(프로그램, 운영노하우 등)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낭비소지 해소.
- 넷째.** 생태프로그램별 운영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무하여 이에대한 보완책 강구 시급.

3

생태 클러스터(Cluster)센터 운영 계획

● 위 치 : 고양 생태학습공원(생태학습관)

● 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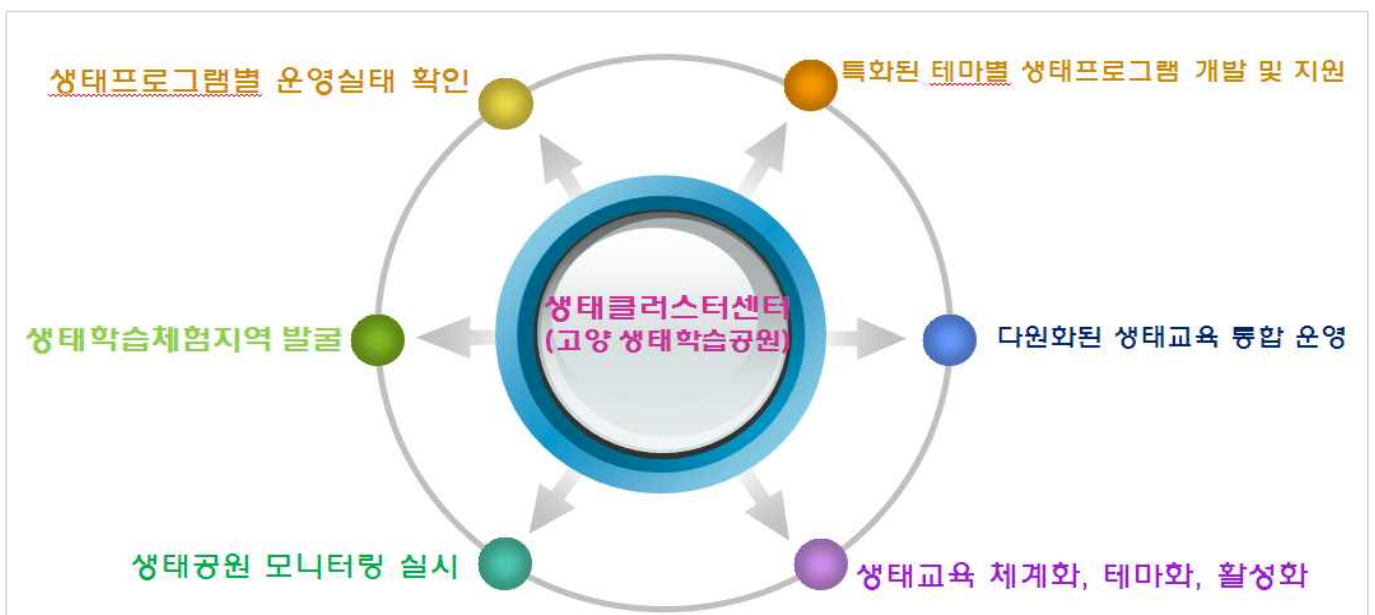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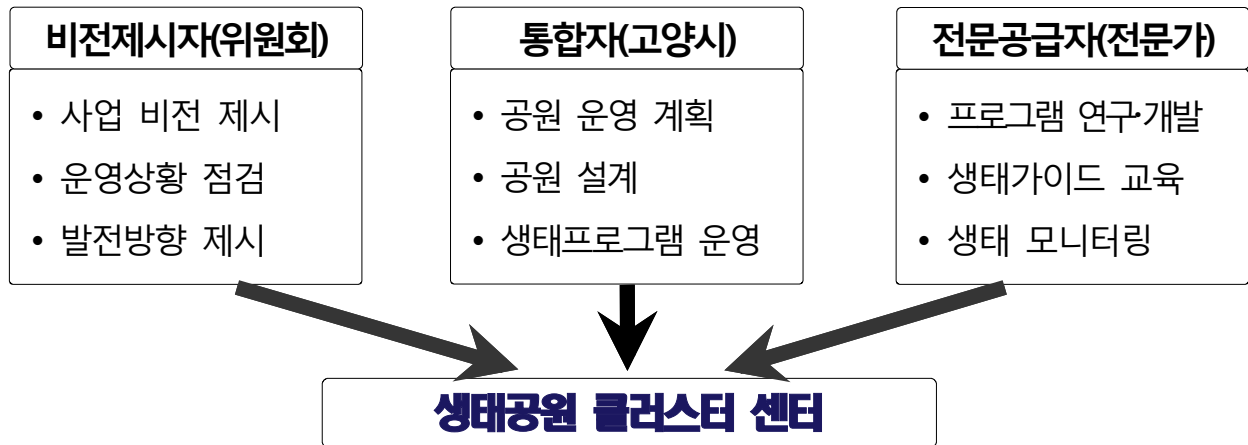
▶ 통 합 자 : 고양시 【주관 : 녹지과】 【협력 : 공원관리과, 환경생태국】

▶ 비 전 제 시 자 : 생태공원 클러스터 위원회, 시민환경단체

▶ 전 문 공 급 자 :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분야별 전문가 집단)



● 추진주체별 역할



4

생태 클러스터 운영 주체별 주요업무

● 생태공원 운영 · 유지관리 (통합자 : 고양시)

- 1) 생태학습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 2) 생태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 3) 예산집행 및 일반관리
- 4) 분야별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 5) 고양교육청과 연계한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6) 고양시 생태학습 · 체험 일주 및 생태지도 제작과 홍보 · 배포

● 생태공원의 특성화 계획 수립(비전제시자 : 클러스터위원회, 환경단체)

- 1) 생태프로그램별 운영실태 확인 및 연계체계 구축
- 2) 특화된 테마별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3) 관내 생태보전이 양호한 지역 발굴 및 생태학습 · 체험프로그램 개발
- 4) 생태공원 모니터링 실시

● 생태가이드 교육센터 운영(전문공급자 : 프로그램개발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 1)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2) 생태가이드 교육 실시
- 3) 분야별 특화된 생태가이드 양성
- 4) 생태공원 모니터링 실시
- 5) 각종 홍보물 제작참여 및 검수

5

생태교육 클러스터(cluster)구축을 통한 연계 및 통합 운영 가능 생태교육 프로그램...

구 분	생태프로그램	비고
조 류	• 안곡습지 • 고양 생태학습공원	
어 류	• 곡릉천 중류지역(필리핀참전비앞) • 창릉천 중류(수중촬영장앞)	
양서,파충류	• 배다골습지(박제궁인근)	
습 지	• 장항습지(체험보다는 보전 위주 운영 필요)	
숲	• 정발산 • 성라공원 • 개명산 • 고양 생태학습공원	
야 생 화	• 호수공원 • 고양 생태학습공원	
농 업 체 험	• 대화농업체험공원 • 고양 생태학습공원	

6

행정사항

- 우리시 유일의 생태주체공원인 고양 생태학습공원을 중심으로, 부서별 기 운영중인 생태교육프로그램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생태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테마화를 위하여 고양시, 환경단체, 분야별 생태전문가 등이 함께하여 우리시 생태교육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생태교육 클러스터(cluster) 센터 운영.

생태교육 클러스터(cluster)구축을 통한 연계 및 통합 운영 가능 생태교육 프로그램...

구 분	생태프로그램	비고
조 류	• 안곡습지 • 고양 생태학습공원	
어 류	• 곡릉천 중류지역(필리핀참전비앞) • 창릉천 중류(수중촬영장앞)	
양서,파충류	• 배다골습지(박제궁인근)	
습 지	• 장항습지(체험보다는 보전 위주 운영 필요)	
숲	• 정발산 • 성라공원 • 개명산 • 고양 생태학습공원	
야 생 화	• 호수공원 • 고양 생태학습공원	
농 업 체 험	• 대화농업체험공원 • 고양 생태학습공원	